

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0. 11. 21.
- 나. 회부일자 : 2000. 12. 8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7차 사회도시위원회(2000. 12. 29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자 : 지적과장 기 영 도)

가. 개정이유

-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운영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2000. 1. 28 폐지(법률 제6236호)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 주요골자

-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 화 순)

-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제정하였으나,
- 본 조례 제정(1994년도)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상위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0년 11월 일

제 출 자 : 광주광역시서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운영 근거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2000. 1. 28 폐지(법률 제6236호)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참고사항

-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공포(2000. 1. 28. 법률 제6236호)
- 부동산중개업시행령 개정 공포(2000. 6. 7. 법률 제16,837호)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